

#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‘99년 5천원으로 인상되어 운영 중인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관련, 패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 세율인 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(제6조 제1호 규정)

- ①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(5천원 인상)

### 나. 조정 배경(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운영)

- 재정 책임성 및 건정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자체노력 반영
  - ▶ 총 14개 항목(수요액 8, 수입액6) 중 탄력세율 부분 해당
- 총 8개 세목 탄력세율 운용 ⇒ 50%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
  - ▶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 범위내 50% 조정 가능
  - ▶ 1만원 미만 부과액의 200% 패널티 적용(‘14년까지 150%)

## ○ 최근 5년간 패널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년도	합계	2015년	2014년	2013년	2012년	2011년
패널티	782	198	145	145	151	143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 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평창군공고 제2015-456호(2015.4.24.~2015.5.22.) 결과,  
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4682호, 2015.4.29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5121호, 2015.5.13)
- 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26471호, 2015.4.30)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 1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세율) 법 제78조제1항의 주 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 다.</p> <p>1.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: <u>5</u> <u>천원</u></p> <p>2. · 3. (생   략)</p>	<p>제6조(세율) ----- ----- -.</p> <p>1.----- <u>1만원</u>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

#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-2270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세법

제78조(세율)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 1. 개인의 세율

- 가.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
- 나.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: 5만원

## □ 지방교부법시행령

제8조(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)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, 산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.

### [별표 6]

####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(제8조 관련)

### 1. 세출 효율화

반영항목	산정방식
1. 인건비 절감	<p>{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(소방직 제외) 결산액 ÷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(소방직 제외)} ×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(소방직 제외)의 50% × 등급 반영률</p> <p>※ 일반회계 · 공기업특별회계 ·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※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(소방직은 제외한다) 결산액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된 금액은 제외한다.</p> <p>※ 우대는 없다.</p>

2. 지방의회경비 절감	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÷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) ×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× 등급 반영률 ※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
3. 업무추진비 절감	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결산액 ÷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) ×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× 등급 반영률 ※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
4. 행사·축제성 경비 절감	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÷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) ×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의 50% × 등급 반영률 ※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,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·축제, 전국체전 등은 제외한다.
5. 지방보조금 절감	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÷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) ×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20% × 등급 반영률 ※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
6. 지방청사 관리·운영	① {청사 1㎡당 단위비용 × (전년도 기준 면적 - 전년도 보유 면적)} × 200% × 등급 반영률 ② 절감 1%당 단위비용 × {1 - (전년도 지방청사 온실가스 배출량 ÷ 전전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지방청사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)} × 100 × 등급 반영률 ※ "①+②"를 반영. 다만, ①은 우대는 없음, ②는 불이익은 없다.

비고

1. 인건비 항목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 구성요소
2. 지방의회경비 항목: 의회비(의원국외여비,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)
3. 업무추진비 항목: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
4. 행사·축제성 경비 항목: 행사운영비, 행사실비보상금, 민간행사보조금, 행사관련시설비

※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%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.

5. 지방보조금 항목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
※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%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.

## 2. 세입 확충

반영항목	산정방식
1. 지방세 징수율 제고	<p>① (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× 등급 반영률 × 150%</p> <p>② (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1/3단체 평균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× 등급 반영률</p> <p>※ 지난 연도분 부과·징수 실적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·지방소비세 부과·징수 실적을 제외하고, 수입은 "①+②"를 반영한다. 다만, ②는 불이익은 없다.</p>
2. 지방세 체납액 축소	<p>(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-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) × 등급 반영률 × 150%</p> <p>※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.</p>
3. 경상세외 수입 확충	<p>(1 -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÷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) ×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× 등급 반영률 × 150%</p> <p>※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이자수입,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.</p>
4.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<p>(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-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) × 등급 반영률 × 150%</p> <p>※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.</p>

5. 탄력세율 적용	<p>[주민세 개인균등분]  (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× 표준세율 + 전전년도 읍·면지역 과세인원 × 표준세율) - (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× 적용세율 + 전전년도 읍·면지역 과세인원 × 적용세율) × 등급 반영률 × 200%</p> <p>[지역자원시설세]  (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「지방세법」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) × 등급 반영률 × 200%</p>
6. 지방세 감면액 축소	<p>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* × 100%</p> <p>*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. 다만, 법령에 따른 감면,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한 감면,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.</p> <p>②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× 150%</p> <p>③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× 150%</p> <p>※ 감면액은 "①+②+③"을 반영한다.</p>
7.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	<p>신세원 징수액 × 적용률</p> <p>*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·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.</p> <p>* 적용률: 최초 100%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나 20%씩 차감하여 반영한다.</p>